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대한민국 내 모든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 조(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자주·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당좌대출·지급보증·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 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2 조 제 1 항, 제 15 조 제 1 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대한민국 내 영업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 1 항 및 제 2 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제 2 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 2 항 제 1 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④ 제 2 항 제 2 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 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 4 항, 제 5 항 및 제 6 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 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⑧ 제 3 항 및 제 6 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4 조(비용의 부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② 제 1 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 54 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 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 년을 365 일 (윤년은 366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③ 은행은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이자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유효금리를 산정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4 조의 2(대출계약의 철회)

※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 4 조의 3(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제 5 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6 조(담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 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 2 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7 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 1 호의 제예치금 기타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을 때
4. 조제공과에 관하여 답기전 답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 1 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제 20 조 제 1 항, 제 21 조 제 1 항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사유의 발생으로 사실과 다르게 된 때, 또는 채무자가 제 20 조 제 2 항, 제 21 조 제 2 항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 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 일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저면으로 면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 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제 2 항 또는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채무자의 제 1 항 제 1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 4. 제 5 조, 제 19 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 7.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 일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제 6 조 제 1 항, 제 15 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보증인이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3 항 제 2 호와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칭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무효됩니다.

제 8 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 1 호, 제 6 호, 제 4 호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 7 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 7 조 제 5 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 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④ 제 7 조 제 2 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 7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 일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은행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 1. 채무자에 관하여 제 7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 7 조 제 3 항, 제 4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 제 2 항의 경우에도, 제 7 조 제 5 항을 준용합니다.

제 10 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 7 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제 1 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치금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 1 항에 의한 상계나 제 2 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치금 등의 이율은 해당 예금등의 가입시 은행과 약정한 이율로 합니다.

제 11 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 1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 ③ 제 1 항, 제 2 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은행이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 1 항과 같습니다.
 -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 10 조, 제 11 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 10 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지체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 11 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 1 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 1 항의 지정에 의하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 13 조에 준하여 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 15 조(위험부담·면책조항)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 1 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 3 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 1 항, 제 2 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종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제 17 조(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통지의 효력)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 16 조 제 2 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 1 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 19 조(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정·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제재(Sanction) 관련 진술, 보장 및 서약)

- ① 채무자는 채무자, 채무자의 자회사, 이들의 이사 등 임직원, 대리인 및 계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개인, 단체를 포괄하여 본 조에서 "법적 주체")가 아니며, 그 법적 주체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도 다음의 사항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1.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 미국 국무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럽연합, 영국 재무부, 홍콩 금융감독청(HKMA)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치 또는 강제한 제재("제재")의 대상, 또는
 2. 쿠바, 이란, 북한, 크리미아 반도, 시리아 등을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위치하거나, 조직되어 있거나 거주하고 있음 (제재 대상 국가는 변경될 수 있음)
- ② 채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출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회사, 합작회사, 파트너 또는 법적 주체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대여하거나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제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법적 주체의, 또는 그 법적 주체가 관여하는, 또는 제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또는 그 정부가 지배하는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또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2. 제 1 호외에 결과적으로 법적 주체가 제재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본 대출에 참여하는 법적 주체가 인수자, 자문사 또는 투자자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제 21 조(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 관련 진술, 보장 및 서약)

- ①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알고 있는 한 그 임직원, 대리인, 계열사, 자회사,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뇌물수수 및 부정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United Kingdom Bribery Act 2010 (the "UK Bribery Act"),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the "FCPA") 및 관련 한국의 관련 법령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상의 의무위반을 하였거나 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채무자 및 채무자가 알고 있는 한 그 계열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 법령 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② 채무자는 여신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위 법령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22 조(FATCA 조항)

- ① 본조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란,
 - 1986년 미국 연방세법 sections 1471에서 1474까지 및 그 관련 규정 또는 관련 공식 지침,
 - 본항 제 1호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외의 관할권에서 제정된, 또는 미국과 그 외 관할권 간 체결된 정부간 계약과 관련된, 모든 조약, 법령, 규정 또는 공식 지침, 또는
 - 본항 제 1호 또는 제 2호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국제청, 미국 정부, 미국 외 관할권의 정부 당국 또는 조세당국과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FATCA 공제”란 FATCA로 인하여 본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서 공제 또는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FATCA 면제대상자”란 본 여신거래계약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에 FATCA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 또는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은행 또는 채무자 각각을 본 제 22조에서 “당사자”라 합니다.
- ② FATCA 정보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청 후 10 영업일 이내에,
 - (i) 본인이 FATCA 면제 대상자인지 여부를 상대방에 확인해주어야 하며,
 - (ii) FATCA 준수를 위해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FATCA 적용대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도관지급율 (passthru payment percentage)” 또는 미국 재무부 규정 및 정부간 계약 등의 기타 공식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 등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만일 당사자가 본항 제 1호 (i)목에 따라 상대방에 본인이 FATCA 면제대상자라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후 FATCA 면제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거나 FATCA 면제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 신속히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본항 제 1호의 내용과 무관하게, 은행은 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 (i) 법령 및 규정
 - (ii) 신의성실 의무 또는
 - (iii) 비밀유지 의무
 4. 만일 당사자가 본항 제 1호에 따라 요청되는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거나 관련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본항 제 3호가 적용되는 경우 포함), 당사자가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시점 또는 양식, 서류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 (i) FATCA 면제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본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FATCA 면제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며,
 - (ii) “도관지급율”을 확인해주지 않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는 본 여신거래 및 이에 따른 지급과 관련하여 “도관지급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③ FATCA 공제

은행은 FATCA에 명시된 바에 따라 FATCA 공제를 하고 동 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러한 FATCA 공제를 한 경우 지급금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증액하거나 달리 FATCA 공제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채무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FATCA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또는 FATCA 공제율이나 공제사유에 변경 사항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채무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채무자는 제 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대한민국 내의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모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인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③ 거래의 종류에 따라 여신거래약정서, 지급보증거래약정서, 수출거래약정서, 수입거래약정서, 외환거래약정서 등의 거래별 약정서가 별도로 체결된 경우, 해당 거래별 약정서도 이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 약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각 거래별 약정서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각 거래별 약정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5 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다릅니다.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 26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관할법원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7 조(언어)

본 약관이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체결되고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국문본이 우선합니다.